

제331회 정례회
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6

서울특별시의회
이원형 의원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원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서울특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, 그 보장항목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, 사망, 후유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는 이러한 보험 청구 가능성과 피해구제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,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조례상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조항,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명문화함으로써,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제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.

-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먼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

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(안 제3조제2항),
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
시민의 권리로 추가하였습니다(안 제4조제2항).

-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에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
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에 따라
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
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